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

-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하고, 법인세법시행령·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제도를 개선·보완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함.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금년 4월부터 위험기준 지급여력(RBC)제도를 도입하여 보험회사의 적절한 재무건전성 확보 및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임.
 - 단, 최근의 경제·금융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병행하여 시행
- 지급여력금액 산정시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('09.2월)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방식*을 원가법과 시가법 모두를 허용하고 있으며, 변액보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반영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임.
 - * 원가법은 이연법인세가 발생하나, 시가법은 이연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음.
- 현재 유형자산외 유가증권 등 자산의 평가이익을 계약자와 주주간 90:10으로 배분하는 기준(배당보험계정 이익)이 마련되어 있으며, 유형자산의 경우에도 처분시 동일한 동일한 배분기분을 적용하고 있음.
 - 이는 기업회계기준 변경('08.12월)으로 유형자산의 평가가 허용됨에 따라 유형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한 배분기분을 마련한 것임.
- 본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, 시행일이 속한 회계 연도부터 적용되며,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(제7-2조의 개정 규정)은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.

(보험업감독규정 개정, 금융위원회 보험과-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, 금융리스크제도실, 3/18)